|  |
| --- |
| 중앙국제공항 |
| 항공보안관리규정 3.0 |
| 미래지향적 글로벌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

|  |
| --- |
| 조명: 팔조비빔면  조장: 20152689황성은  조원: 20155758 이우성, 20164862유나은,  20175229 홍선영, 20171803 정종윤  2019-4-1 |

**목차**

[**제0장 가상 기업 설정** 4](#_Toc5033642)

[**제1장 총 칙** 5](#_Toc5033643)

[제1조 목적 5](#_Toc5033644)

[제2조 적용범위 5](#_Toc5033645)

[제3조 적용규정 5](#_Toc5033646)

[**제2장 항공보안업무규정** 6](#_Toc5033647)

[제1조.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6](#_Toc5033648)

[제1조의2.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 7](#_Toc5033649)

[제2조.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8](#_Toc5033650)

[제2조의2. 항공보안 모의훈련 10](#_Toc5033651)

[제3조.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11](#_Toc5033652)

[제4조.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11](#_Toc5033653)

[제5조. 보호구역 지정 12](#_Toc5033654)

[제5조의2. 보호구역 출입통제 13](#_Toc5033655)

[제5조의3.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변경 및 취소 14](#_Toc5033656)

[제6조.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14](#_Toc5033657)

[제7조. 통과 승객ㆍ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ㆍ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15](#_Toc5033658)

[제8조.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15](#_Toc5033659)

[제9조.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6](#_Toc5033660)

[제10조.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17](#_Toc5033661)

[제11조.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8](#_Toc5033662)

[제11조의2.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18](#_Toc5033663)

[제11조의3.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19](#_Toc5033664)

[제12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ㆍ전달체계 19](#_Toc5033665)

[제13조.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ㆍ유지 19](#_Toc5033666)

[제14조.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20](#_Toc5033667)

[**제3장 공항연구보안관리 규정** 22](#_Toc5033668)

[제1조. 목적 22](#_Toc5033669)

[제2조. 용어정리 22](#_Toc5033670)

[제3조. 적용범위 22](#_Toc5033671)

[제4조. 보안대책 수립시행 23](#_Toc5033672)

[제5조. 연구보안심의회 23](#_Toc5033673)

[제6조. 항공보안협의회 24](#_Toc5033674)

[제6조1. 과제 선정 및 수행 절차 25](#_Toc5033675)

[제6조의2. 정부 R&D과제 선정 과정 - 국토교통부 과제 25](#_Toc5033676)

[제6조의3. 정부 R&D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25](#_Toc5033677)

[제6조의4. 자체 R&D과제 - 자체연구 및 용역연구 과제 26](#_Toc5033678)

[제7조. 보안등급 분류기준 26](#_Toc5033679)

[제8조. 보안등급 분류 절차 27](#_Toc5033680)

[제9조. 보안등급 변경 27](#_Toc5033681)

[제10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27](#_Toc5033682)

[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28](#_Toc5033683)

[제12조. 참여연구원에 대한 조치 29](#_Toc5033684)

[제13조. 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보안조치 29](#_Toc5033685)

[제14조. 통신기기 등의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30](#_Toc5033686)

[제15조.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보안대책 30](#_Toc5033687)

[제16조(국제공동연구 시 보안조치) 30](#_Toc5033688)

[제17조(해외 기술이전 시 보안조치) 31](#_Toc5033689)

[제18조. 연구개발 성과물관리 31](#_Toc5033690)

[제19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31](#_Toc5033691)

[제20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조치 32](#_Toc5033692)

[제21조.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32](#_Toc5033693)

[제22조. 문제점 해결 등에 대한 조치 33](#_Toc5033694)

[제23조. 기타 33](#_Toc5033695)

[**개정 및 신설 규정에 대한 해설** 34](#_Toc5033696)

[**참고문헌** 37](#_Toc5033697)

제0장 가상 기업 설정

본 연구에서 가상 기업으로 설정한 ‘중앙국제공항’은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규모 및 현황은 누적승객 1억명 돌파, 3년 연속 ASQ(Airport Service Quality) 평가 1위, 공항종사자 수 35,000명으로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동북아시아 중추(Hub) 공항이다. 중앙국제공항은 ‘미래지향적 글로벌 보안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세우고 ①선진형 항공보안 인프라 확대 ②스마트항공보안 체계 기반 조성 ③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④글로벌 항공보안 선진국으로서 위상 제고를 목표로 5개 부문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가정1) 중앙국제공항은 ‘스마트공항’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셀프 체크인·수하물 드롭·셀프 탑승·수하물 탑재·항공기 유도 자동화·신개념 보안체크 포인트·활주로 및 주기장의 첨단관리 등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스마트 공항이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해 승객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자산과 연결된 ICT 환경을 구축 및 최적화하며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공항을 뜻한다.

**가정2) 중앙국제공항은 정부에서 연구중인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의 시범운영 공항으로 선정되었다.**

**가정 3) 본 규정은 미래지향적이며 신규 규정에 대하여 현재 도입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스마트 공항 등 현재 도입하기에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존재하며, 이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논의 및 관련 법·정책 제정이 필요하다. 본 규정은 그러한 연구 및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뒷받침 되었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도입하였기에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가정 4) 본 규정은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안으로 신규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의 기대되는 효과에 의거하여 만든 것으로, 즉 제도의 도입 ‘취지’에 집중하였다.**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중앙국제공항(이하 “중앙공항”이라 한다)의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 및 보호 자산을 확보하고 항공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공항운영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모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3. 항공기취급업체·공항상주업체·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

4. 항공교통관제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 **제3조 적용규정**

1. 국내법규 및 규정

가. 항공보안법

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다. 국가 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라. 국가항공보안계획

마.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바.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사. 교육훈련지침

아.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자.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차.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카.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타. 액체·분무·겔류 보안통제지침

제2장 항공보안업무규정

## **제1조.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①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 부서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footnote-1)

1.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에 따른 자체 수준관리 계획의 수립·이행

2.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 임명

3.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4. 기타 공항 점검 및 불시평가 관련 업무

②공항운영자는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보안평가, 보안점검, 현장조사 및 불시평가 등의 점검활동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 항공사,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은 보안검색 수행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위탁업체, 기내식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자체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을 실시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에 점검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평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⑤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2]](#footnote-2)

1. 점검 목적 2. 점검 대상 3. 점검 기간

4. 점검관 5. 주요 점검 항목 6. 그 밖에 점검활동 수행에 필요한 물품

⑥보안평가, 현장조사,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를 실시하는 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점검활동 수행자들에게 점검 목적, 주안점 및 점검대상의 보안현황 등에 대하여 사전 브리핑을 실시한다. ⑦불시평가를 실시하는 책임자는 불시평가 실시 전에 불시평가 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특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불시평가 계획 2. 공항 구조 및 보안통제 특성

3. 불시평가 물품 사용방법 및 회수절차 4. 불시평가 시 준수사항

5. 불시평가 성공 또는 실패 시 대처법

⑧공항 보안책임자,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책임자는 점검활동 수행자가 보안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점검활동 수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안평가 등을 종료한 때에는 점검지연으로 인한 시간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점검결과 및 점검 중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3]](#footnote-3)

⑩불시평가 실시 책임자는 불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여 공항 또는 항공기 운항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또는 항공사 책임자에게만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⑪불시평가를 사전에 통보받은 공항 또는 항공사 보안책임자는 이 내용을 관련 책임자만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하며 불시평가를 받는 보안검색요원 또는 보안요원에게 해당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footnote-4)

⑫점검활동 수행자는 제8조에 따라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⑬작성한 보고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보고서 또는 점검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한다.[[5]](#footnote-5)

⑭점검활동 책임자 및 수행자는 점검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점검활동의 결과를 항공보안업무 관련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footnote-6)

1.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경우

3.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 **제1조의2.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7]](#footnote-7)

1. 보안절차를 점검할 목적으로 국가에 등록되었거나 운용중인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구치할 수 있는 권한

2. 공항에 대한 전부 또는 부분 점검할 수 있는 권한

3. 보안대책 및 절차 효율성에 대한 점검 및 불시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

4. 공항운영자, 항공사 또는 공항 상주업체 등에게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5.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

6.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무전기, 카메라, 음성 및 영상기록장치, 사전 승인된 무기, 모의 폭발물 등과 같은 장비를 공항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위탁수하물칸으로 반입 및 운반할 수 있는 권한

7. 보안기준이나 보안절차 점검을 위하여 관련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

## **제2조.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①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의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8]](#footnote-8)

②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9]](#footnote-9)

1. 초기교육(Initial Training)

2.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

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③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주기, 교과내용, 서류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훈련지침에 따른다.[[10]](#footnote-10)

④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부터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이하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이라 한다) 및 직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에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1]](#footnote-11) 재교육 시 최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2]](#footnote-12)

1. 관련 법 및 규정 변경사항

2. 항공보안 관련 새로운 위협

3. 위협상황에 대한 정보 및 보안 위해물품

4. 보안관련 사고․사례 분석

5. 기본 검색 절차 및 기법 반복

6. 미신고 항공위험물 인지 및 승객․승무원에 관한 규정 등

⑦보안검색요원의 객관적 자질확보를 위해 시험출제 또는 심사과정을 제3의 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⑧교육과정 표준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된 표준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⑨교육훈련지침에 따라 항공보안교육 훈련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기록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안검색요원 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최소 90일간 교육훈련 결과를 유지·관리한다.[[13]](#footnote-13)

1. 교육명칭 2. 교육일시 3. 교육장소

4. 교육시간 5. 강사 6. 교육시간표

7. 불시평가 또는 평가 결과(해당과정에 한한다) 8. 참석자 명단 및 서명

⑩교육훈련지침에 따라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훈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4]](#footnote-14)

## **제2조의2. 항공보안 모의훈련**

①공항운영자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의 장 등 관련자는 모의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5]](#footnote-15)

②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16]](#footnote-16)

1. 공항 또는 항공기 테러와 관련된 모든 부서 및 관련기관의 대응능력향상

2. 우발계획 대응 절차 숙지

3. 비상장비 및 통신 장비 시험운용 및 상태점검

4. 최단시간내 항공기 운항 및 공항운영 정상화

5. 수립된 공항, 항공사 우발계획의 취약점 확인 및 수정

③공항운영자는 모의훈련을 끝낸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7]](#footnote-17)

④모의 훈련의 종류와 시행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8]](#footnote-18)

1. 종합훈련은 항공기 납치, 폭발물 위협 등 불법방해행위 대응과 관련된 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테러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설정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서 정한 기관별 임무 수행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2. 부분훈련은 항공기 납치, 폭발물 위협 등과 관련된 특정부분에 대한 조직별 대응훈련, 새로운 장비나 기술 시험,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며, 또한 종합훈련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항 운영자 등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가능한 한 제1항의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해에 실시한다.

3. 도상훈련은 종합훈련시 발생되는 비용이나 공항 운영의 피해없이 비상 대응 조직의 대응능력을 불시평가하는 훈련으로 공항비상운영센터 내에서 관련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도면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공항운영자 등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종합훈련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공항운영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9]](#footnote-19)

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훈련 계획 수립·주관

나. 비상운영센터 가동 등 필요 장비 및 인력 확보

다. 훈련에 따른 항공기 파손 및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귀책사유가 공항운영자에게 있을 경우에 한한다)

라. 기타 종합적인 훈련 준비 및 시행업무 수행

## **제3조.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①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0]](#footnote-20)

②공항운영자등은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1]](#footnote-21)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 **제4조.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①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誘導路), 계류장(繫留場), 격납고(格納庫)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활주로, 유도로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javascript:;)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항행안전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항공기 항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⑤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javascript:;)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javascript:;)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javascript:;)으로 정하는 행위

⑦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22]](#footnote-22)

## **제5조. 보호구역 지정**

①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23]](#footnote-23)

④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24]](#footnote-24)

1.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2. 출입국심사장

3. 세관검사장 4. 관제탑 등 관제시설

5. 활주로 및 계류장(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정비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계류장은 제외한다)

6. 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7. 화물청사

8.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 **제5조의2. 보호구역 출입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25]](#footnote-25)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항공보안[법](javascript:;) [제13조](javascript:;)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법](javascript:;) [제13조제1항제1호](javascript:;)에 따른 사람에게 보호구역등에 출입허가를 하려면 [「보안업무규정」](javascript:;) [제33조](javascript:;)에 따른 신원조사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호구역등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을 붙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⑦출입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가 정한다.**[[26]](#footnote-26)**

## **제5조의3.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변경 및 취소**

①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7]](#footnote-27)

1.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

2. 보호구역등의 도면

3.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4. 지정기간(임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변경사유

2.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3.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③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사유

2.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 **제6조.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①항공기에 탑승하는 자는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③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28]](#footnote-28)

⑤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 등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9]](#footnote-29)

## **제7조. 통과 승객ㆍ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ㆍ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때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 비용분담 및 운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30]](#footnote-30)

⑤’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을 도입하여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화물 등이 출발공항에서 목적지까지 보안검색 및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안이 확보되는 경우 경유지(목적지)에서 중복적인 보안조치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원스톱 보안이란 출발지 공항이나 1차 보안 보안검색에서 충분한 보안이 확보됐다고 인정될 경우 불필요한 보안검색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정의)

⑥보안이 확보되는 규정은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 부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 **제8조.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①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javascript:;) [제4조제1항](javascript:;)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javascript:;) [제32조](javascript:;) 및 [제50조](javascript:;)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javascript:;)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javascript:;)으로 정한다. ⑥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javascript:;)으로 정한다. ⑦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령](javascrip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31]](#footnote-31)

⑧스마트공항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셀프 체크인·수하물 드롭·셀프 탑승·수하물 탑재 등의 자동화 프로세스 또한 승객 검색의 절차로 인정된다. 단,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보안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재검색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①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용한다.

②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이하 "보안검색요원 등"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자는 채용대상자의 신원 및 범죄 사실 등을 포함한 이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한 자는 해당 보안검색요원 등이 신원조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다시 실시한다.[[32]](#footnote-32)

④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요원의 감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안검색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후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33]](#footnote-33)

⑤공항운영자가 항공경비요원의 감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항공경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항공경비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34]](#footnote-34)

⑥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의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35]](#footnote-35) 교육훈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규정 제2장 제2조를 참고한다.

## **제10조.**[**법**](javascript:;)[**제12조**](javascript:;)**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①"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행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과 공항내 민자시설주를 말한다.[[36]](#footnote-36)

②항공보안감독관은 공항 상주업체 등에게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37]](#footnote-37)

③공항상주업체 등은 현장보안확인의 대상이 된다.[[38]](#footnote-38)

④공항상주업체 등은 현장조사의 대상이 된다.[[39]](#footnote-39)

⑤공항상주업체 등은 보안점검의 대상이 되며,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40]](#footnote-40) 점검항목은 보호구역외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실태 등이다.[[41]](#footnote-41)

⑥공항상주업체 등은 불시평가(Test)의 대상이 된다.[[42]](#footnote-42)

⑦상주직원 등이 보안검색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승객·승무원,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보안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43]](#footnote-43)

## **제11조.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①장비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장비운영자가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javascript:;)으로 정한다. ③우리나라와 항공보안장비 성능 상호인증 협약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그 성능을 인증받은 항공보안장비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44]](#footnote-44)

## **제11조의2.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①[법](javascript:;) [제27조제1항](javascript:;)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항공보안장비의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의3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javascript:;) [제36조제1항](javascript:;)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45]](#footnote-45)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항공보안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설명서

5. 항공보안장비의 구조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7. 항공보안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98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81221#AJAX) 서류로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1조의3.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①인증기관은 [법](javascript:;) [제27조제4항](javascript:;)에 따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46]](#footnote-46)

1. 정기점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및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 등에 관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 **제12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ㆍ전달체계**

①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7]](#footnote-47)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3.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ㆍ유지**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 기록 등의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48]](#footnote-48)

②항공보안[법](javascript:;) [제29조](javascript:;)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49]](#footnote-49)

1.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ㆍ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2.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무기 등 위해물품 적발 현황 및 적발된 위해물품의 처리 결과

4.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기록

5. 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

## **제14조.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① (정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이란 의심되는 승객을 선별하고 검색 승객으로 분류하여 해당 승객 및 승객이 소지한 수하물에 대하여 정밀검색을 하여 효율적인 보안 검색을 하는 것을 뜻한다.

② (목적) 불법행위 등으로 항공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인물에 대한 리스트 및 사전 정보 구축

③공항 운영자 또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은 범죄자, 즉 항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테러리스트 등의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Secure Flight, 승객검색 프로파일링,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등 세 가지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Secure Flight

(정의) Secure Flight는 감시 리스트를 통해 수상한 승객을 발견 및 관리하고 공항 내 위험-기반의 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절차

가. 승객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 성명, 생년월일, 성별, Redress Number(감시대상이 아닌 승객이 감시대상으로 잘못 등록 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급해 주는 지정코드)를 제출하면 항공사는 확인된 승객의 정보를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승객의 항공기 탑승여부를 통보받은 결과를 통해 승객의 탑승을 결정한다. (이때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SFPD(Secure Flight Passenger Data)와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통보하는 항공기 탑승결정은 보안사항이다.)

다. 감시명단(watch list)의 대조 대상은 항공기를 탑승하는 승객뿐 만 아니라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공항안전지역에 출입하는 인원(non-traveler), 즉 미성년자, 장애 인 등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공항안전지역까지 동행하는 인원도 포함한다.

라. 승객의 정보는 여행종료 후 7일간 유지하고, 비탑승객의 정보는 안전지역을 떠난 후까지만 유지한다. 그러나 승객과 비탑승객의 개인정보가 자동검색장치에서 감시명단(watch list)과 일치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위험성이 명확히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99년간 기록을 유지한다

2.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Screening Passengers by Observation Technique)

(정의)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이하 SPOT)은 공항 내 배치된 행동감지요원이 수상한 승객의 행동을 파악·분석하여 승객의 탑승여부를 정확히 가려내는 방식이다.

가. 행동감지요원(Behavior Detection Officer: BDO)을 지정하여 의심인물을 선정하고 해당자의 위해 여부를 가려내도록 한다.

나. BDO는 특정한 민족, 인종, 종교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Registered Travel Program)

(정의)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은 항공에 탑승하고자 하는 승객이 자신들의 전력 및 생체 데이터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프로파일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가. 항공기 승객이 자신들의 전력 및 생체 데이터(지문 및 홍체사진)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가입비를 낸 후 생체암호 통과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를 받음으로써 특별보안검색 통로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표준적인 공 항검색절차를 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통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나. 테러리스트들이 감시명단(watch list)에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감시명단 여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단, 필요 이상의 승객 정보를 수집하는 등 승객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조직 편성, 프라이버시 보호법, 인식과 훈련, 감시와 준수, 배상과 조치, 프라이버시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장 공항연구보안관리 규정

## **제1조.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공항시설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국제공항연구원(이하 ‘연구기관’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고, 정부의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공항의 안전운영절차를 수립함으로써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정리**

1) “대표자”라 함은 공항 이동지역 및 지원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라 함은 기관의 장 및 소유자가 소속별 자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정한 자로서 안전한 업무환경 및 절차와 소속종사자들의 업무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항공보안관리자”라 함은 항공기 및 항공시설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에 대하여 항공업무를 총 관리 및 감독하거나 항공정보업무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6) “공항운영규정”이라 함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 및 운영하는 인력, 시설, 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국제공항의 상위 관리 항공사인 한국공항공사는 물론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취급업자 등 중앙국제공항의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정부기관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2. 중앙국제공항의 안전운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법령, 훈령 및 고시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중앙국제공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협동기관(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학, 항공부품연구소, 항공부품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4. 항공기취급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모든 국내의 항공운송사업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 **제4조. 보안대책 수립시행**

중앙국제공항의 공항운영자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주요 보안사항을 협력기관 및 정부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12개 정부기관 국장급 및 공항, 항공사 임원진으로 구성하여 보안관리 담당자를 선출하고 지정 및 항공보안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안관리심의회~~** (삭제)

## **제5조. 연구보안심의회**[[50]](#footnote-50)

①항공기 및 항공 부품 제조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51]](#footnote-51)

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52]](#footnote-52)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항공기 및 항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과 협력업체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을 통한 효율성 확보

나.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다.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라. 협력 기관들의 보안관리 현황 및 보안관리 규정에 대한 보고사항

마. 소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상정한 안건

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심의사항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안건에 대한 출석한 위원의 찬성이 과반수일 경우, 의결한다.[[53]](#footnote-53)

## **제6조. 항공보안협의회[[54]](#footnote-54)**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정부 및 기타 기관들의 R&D과제에 관한 협의

## **제6조1. 과제 선정 및 수행 절차**

제6조의 4항에서 R&D과제에 관한 선정 및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연구과제공모

내부 방침에 의해 과제 공모 및 심의방법 결정

②연구보안심의회 심의

연구보안심의회는 내부적으로 연구 과제 심의 절차 수행

③과제 선정

과제는 정보 R&D과제(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또는 자체 R&D과제(자체연구,용역연구)의 형태로 수행

## **제6조의2. 정부 R&D과제 선정 과정 - 국토교통부 과제**

정부R&D과제는 국토교통분야 과학기술및 건설교통신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부합하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 성과 관리 및 실용화가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일컫는다.

1) 주관기관(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게 과제발굴 및 제안

\*주관기관이란 공사가 주관하는 경우 공사, 공사가 공동 또는 위탁연구로 참여 시 타기관을 말한다.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가과제 심의채택 후 과제수행 기관을 공모

3)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에 신청 및 접수

4) 전문기관이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및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 **제6조의3. 정부 R&D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정부 R&D과제란 국산화 장비 개발 등 개발품에 대한 지속적 구매 수요가 발생하며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과제를 일컫는다.

①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할경우, 공사에서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과제 발굴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의 전문기관에서 과제 검증 및 공고의 과정을 거친다. ②참여기업이 전문 기관에 신청 및 접수하여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이 현장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게되며, ③전문기관과 참여기업 및 공사간의 협약체결 이루어진다.

## **제6조의4. 자체 R&D과제 - 자체연구 및 용역연구 과제**

자체 R&D과제란 공사 자체 수요 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술 및 정책연구 과제를 일컫는다.

①자체연구의 경우 공항 연구소 실무부서에서 연구 수행 계획을 수립한 후 공항연구소에서 연구 착수 및 수행하고 공항연구소 실무부서에서 과제 관리 및 실용화를 추진한다.

②용역연구의 경우 공항연구소 실무부서에서 연구 수행 계획을 수립하면 공항연구소에서 연구과제 발주준비 및 의뢰하고 계약부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공항연구소 실무부서에서 용역 관리 및 실용화를 추진한다.

## **제7조. 보안등급 분류기준[[55]](#footnote-55)**

① 항공기 및 부품 생산관련 기술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핵심보안 등급[[56]](#footnote-56)

가. 항공사업법, 테러방지법 등에 의해 국내 및 국외로 기술이 유출 될 경우, 시민이나 시설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국가안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 및 방지해야하는 기술

나. 외부로 유출 될 경우, 지식적, 재산적, 기술적 가치의 손실이 항공관련 사업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품 및 기술

다.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항공방위산업관련 연구과제

라.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2. 일반 등급 : 핵심보안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및 연구과제

## **제8조. 보안등급 분류 절차[[57]](#footnote-57)**

①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대하여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보안평가, 보안점검 등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항공보안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안점검 수행 및 보안등급 평가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58]](#footnote-58)

③제1항에 따라 보안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7일전에 계획을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평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59]](#footnote-5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및 결과를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한다. ⑤항공보안감독관은 보안등급의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60]](#footnote-60)

## **제9조. 보안등급 변경[[61]](#footnote-61)**

①항공기 및 항공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책임자가 보안등급이 책정된 기술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는 사유 및 내용을 지정된 항공보안감독관 및 보안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기술개발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안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사실을 항공보안감독관 및 보안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62]](#footnote-62)

## **제10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항공보안감독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안등급의 최종평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63]](#footnote-63)

## **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64]](#footnote-64)**

①항공보안감독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항공보안감독관 및 임원들은 항공기 및 항공관련 기술의 선정, 평가에 대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65]](#footnote-65)

③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과제

가.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을 기반으로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기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나.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다.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의 교육을 관리 및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조직 구성

라.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수립 및 이행

마. 항공기 및 항공 관련기술의 보안관리와 여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바.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사. 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및 보안사고 예방, 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한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통신수단, 항행 및 탐지 인프라 등 시설보안

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보안서약서를 항공보안감독관에게 제출

차.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 임명 및 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타.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실태와 보안검색 업무 수행 실태 확인 등의 현장보안 업무 이행

2. 일반과제

가.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 참여연구원에 대한 조치**

항공기 및 항공관련 기술의 연구책임자와 항공보안감독관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핵심기술자료, 업적과 연구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항공관련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보안이 불가피한 정보 및 결과물에 대해 비밀정보로 취급하고, 관련 연구시설 등이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66]](#footnote-66)

②참여연구원이 항공관련 기술 수행과 관련하여 이전의 유출혐의를 받은 경우 연구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항공관련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협약서와 함께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항공관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도 신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각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67]](#footnote-67)

## **제13조. 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관련 자료에 대해 외국인의 연구 참여 및 외국기관과의 위탁연구를 제한하되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68]](#footnote-68)

②참여연구원이 외국인과의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관련된 외국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이 항공관련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자의 보안 등급을 설정하여 출입지역과 열람 가능한 데이터들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존과 다른 특이행동이 발견될 경우, 연구책임자는 즉시 항공관리감독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69]](#footnote-69)

## **제14조. 통신기기 등의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의 네트워크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①제11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및 제12조(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보안조치)의 각 항에 통신기기에 관한 보안조치가 명시되어있음.

## **제15조.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보안대책**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개발의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연구 책임자는 외국 정부기관 또는 그와 관련된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항공기술연구에 관한 명칭,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 및 장소 등 주요 방문내용 사항을 문서로 항공관리감독관에게 방문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70]](#footnote-70)

③항공관리감독관은 항공기술관련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항공관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71]](#footnote-71)

## **제16조(국제공동연구 시 보안조치)**

①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국기업 및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공동연구를 위해서 제공한 자사의 특허나 노하우 처리

2. 정보 등 제공과 비밀유지 의무

3. 연구의 역할분담 또는 비용분담 중지의 경우 처리

4. 연구개발기간의 설정

5.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6. 특허권의 출원 등의 처리

7. 특허권의 실시(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

8. 공동연구 종료 후 이용특허권의 처리 등

## **제17조(해외 기술이전 시 보안조치)**

해외 기술이전 추진 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 및 합병), '항공안전법 제8장 외국항공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들을 고려하여 보안조치를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술 분류 및 정보 접근권한의 부여, 통합인증관리 수행

나. 기술연구개발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수행

다. 연구개발 보호관리 실태점검 등

라. 자체 산업의 기술 보호 세부규정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 점검

마.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정황 및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그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가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고 및 필요한 대응 조치 수행

## **제18조. 연구개발 성과물관리**

항공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외로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자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및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안 예방 조치를 확립하여야 한다.**[[72]](#footnote-72)**

## **제19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①항공보안감독관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1회 (10월중) 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보안관리 심의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73]](#footnote-73)

## **제20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조치**

①공항운영자, 항공사,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은 보안검색 수행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위탁업체, 기내식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자체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에 점검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평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따른 점검일정 및 결과를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한다.[[74]](#footnote-7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른 위험평가 및 위협분석 또는 항공보안 위해요소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점검 횟수 및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75]](#footnote-75)

1. 점검 목적 2. 점검 대상 3. 점검 기간 4. 점검관 5. 주요 점검 항목

6. 그 밖에 점검활동 수행에 필요한 물품

## **제21조.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실시한 후 제54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기록한다. ②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 분석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시정조치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부한 시정조치서의 조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보안점검 또는 불시평가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재확인한다. ④시정조치서를 접수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이행시기를 현장조치, 단기(10일 이내), 중기(10일 이상 3개월 미만), 장기(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6]](#footnote-76)

## **제22조. 문제점 해결 등에 대한 조치**

①항공보안감독관은 보안사고 문제점의 분포도에 따라 다음 연도 감독계획에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보안감독관은 각 부문(시설, 항공, 공항 등)에서 인지된 증․감소율에 따라 개선 대책을 재수립하거나 강화하여야 한다.[[77]](#footnote-77)

## **제23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및 ‘항공운항안전법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및 신설 규정에 대한 해설

**•제2장 제2조 ⑦ (추가) 보안검색요원의 객관적 자질확보를 위해 시험출제 또는 심사과정을 제3의 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는 보안검색요원의 인증평가가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 결여 및 평가 시 교육기관별 편차가 존재한다. 보안검색요원의 객관적 자질확보가 필요하다.

**•제2장 제2조 ⑧ (추가)** **교육과정 표준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된 표준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는 보안검색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관의 수준 등에 편차가 존재하며 표준화된 교육교재가 부족한 실정이다.[[78]](#footnote-78)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화한 교재를 발간하여 이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

**•제2장 제7조 ⑤, ⑥ (추가)** **⑤’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을 도입하여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화물 등이 출발공항에서 목적지까지 보안검색 및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안이 확보되는 경우 경유지(목적지)에서 중복적인 보안조치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원스톱 보안이란 출발지 공항이나 1차 보안 보안검색에서 충분한 보안이 확보됐다고 인정될 경우 불필요한 보안검색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정의) ⑥보안이 확보되는 규정은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 부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목적)환승객의 편의성을 위함.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화물 등의 검색을 간소화

-현장실사를 마친 미국 4개 공항(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에 대해 원스탑 보안을 적용, 환적수하물 보안검색 면제 적용 중이다(16.3.7~). LA공항을 제외한 미국 출발공항 중 환승객수 차순위 공항인 시애틀, 애틀랜타 공항으로 환적수하물 보안검색면제 적용 확대 예정이다.[[79]](#footnote-79)

•**제2장 제8조 ⑧ (추가)** **스마트공항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셀프 체크인·수하물 드롭·셀프 탑승·수하물 탑재 등의 자동화 프로세스 또한 승객 검색의 절차로 인정된다. 단,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보안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재검색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 공항이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해 승객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자산과 연결된 ICT 환경을 구축 및 최적화하며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공항을 뜻한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항공과 공항산업은 국제간 이동이 주 대상이므로 편리성, 효율성이 대두된다.

-스마트공항의 위협요인

①인적요소 ②악의적 의도 ③시스템 오작동 ④내부자에 의한 위협 ⑤자연재해와 사회문제

스마트공항 3가지 공격 시나리오

①'공항여객 셀프서비스 시스템 조작'

② '수하물 처리시스템 네트워크 공격'

③'드론을 이용한 전파교란과 위장'

→사이버보안 우선 처리, CSO를 통한 역할과 자원 분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및 운영, 소유주체에 적합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정책, 정부의 협력추진체계를 통한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수립, 제품 개발 시 보안내재화 접근 방식 이용이 필요하다.

•**제2장 제9조 ① (추가)**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용한다.**

-현재 보안감독자, 보안검색 요원 등 보안관련자는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 상의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고, 특별한 자격 기준 및 인증 제도가 없다.

-보안검색요원의 연이은 검색실패 발생 및 신분 불안정에 따른 이직율 증가 등에 따라 업무역량 향상 및 근무여건 등 개선 필요(국내 15개 공항 및 7개 항공사 등의 검색요원은 약 2천명으로 처우 불안정 등으로 연간 이직률이 약 20%에 달하는 실정)

-보안검색 업무의 난이도, 중요성을 부각하고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보안검색요원의 자격제도 신설 필요.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업무 역량 향상의 선순환 구조 조성)

-검색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향상 등을 위한 경력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

-검색요원의 교육 강화, 경력관리, 피로관리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공항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신공항 개항에 따른 보안인력 확충 등

-연구용역을 거쳐 자격종류, 시험응시요건, 과목, 위탁기관 및 경력관리방안 등 마련

-자격수당 지급, 경력관리 등을 통해 사기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출처: 2017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21p)

•**제2장 제14조 (추가)**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각국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등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검색의 강화는 시간의 지체로 인해 정상적인 항공 운영에 지장을 줌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승객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또한 일괄적인 적용으로 보안요원의 피로도가 과중됨에 따라 검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이다.

-최초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은 이스라 엘에서 적용되었다(이규황, 2007). 1969년 2월 18일 무장한 4명의 팔레스타인해방 인민전선(PFLP) 테러리스트들이 취리히 공항에 주기된 EL AL항공기에 기관총을 난사한 이스라엘 항공기 공격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보안 당국에서는 자국 항공기 보안에 대한 많은 대응책을 수립하였다. 이 때 기내 보안요원 배치, 승객검색, 조종실 보안 등과 함께 수상한 승객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토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기내난동 등 항공기 운영적인 측면에 불편을 초래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블랙 리스트(Black List)만 작성되고 있을 뿐 미국의 감시명단(Watch List)과 같이 불법행위 등으로 항공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 정보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안 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위험인물에 대한 리스트 및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관, 국토해양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교통보안청 같은 산하 전담 부서 설치 필요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 많은 연구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장 제5조 (삭제)** **보안관리심의회**

- 연구보안심의회의 내용이랑 대부분이 중복

**•제3장 제6조 (추가)** **항공보안협의회**

-항공기 및 공항 등의 시설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준높은 보안조치 및 경고와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인해 항공기 테러와 시설에 대한 보안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존재하는 법령 및 법률들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항공보안감독관 및 책임자들이 미처 방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함에 있다.

**•제3장 제6조1,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4 (추가) 과제 선정 및 수행 절차, 정부 R&D과제 선정 과정, 정부 R&D과제, 자체 R&D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항공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지위(항공운송 규모 세계 8위)에 비해, 그동안 항공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나 국내 업체들의 항공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는 항공선진국 대비 다소 미흡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항공교통량에 대비하여 각종 항공사고의 예방 및 보안 그리고 세계 항공시장의 점유를 위해 차세대 항공기술의 선제적인 개발과 활성화, 실용화를 위한 R&D연구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항공기술이 점차 대형화 및 고속화로 인해 항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규모는 막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가 아닌 넓은 범위의 시설이 파괴되거나 항공기의 경우에는 탑승자 전체가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는 전손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가 증폭되고있다. 또한, 국적기 항공사고는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며, 국내외를 연결하는 항공교통량이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의 위험성도 비례하여 증가하고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항공시장은 2020년까지 세계시장의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 R&D 사업의 필요성은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항공보안수준관리지침  
[시행 2017. 3. 31.] [국토교통부예규 제150호, 2017. 3. 3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보안법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4954호, 2017. 10. 24.,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8. 12. 2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시행 2004. 4. 1.] [법률 제7050호, 2003. 12. 3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시행 2017.4.3] [국토교통부예규 제151호, 2017.4.3,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항시설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5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안전법  
[시행 2019.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공항 시대를 위한 우리의 자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ti10&logNo=221412750613&categoryNo=1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 “스마트공항, 불편은 빼고 보안은 더하다”, 보안뉴스, 2018년 5월 27일.

• 최재현·정재한,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4호, 2013.

• 양승돈·양영모,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미국 항공프로파일링 기법의 국내 활용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8호, 2014.

•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100대과제보도자료’, 2018.6.17.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체계적인 스마트공항 추진을 위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요약보고서’, 2017.12.

• 김포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제43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지침 전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 지침(예규 제588호)

• 국제공항공사 공항운영규정

•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스마트 공항(Smart Airport) 국내외 추진실태와 과제', 한국교통본부 | 한국교통연구원

•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2018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2018.2

• '스마트 공항 진화 동향과 유망 서비스 발굴 - 여객 니즈를 중심으로 -', Insight Report 2018-12, 김문구

• 인천공항연구소, ‘연구수행절차’, https://www.airport.kr/arsc/area/research/index.jsp

1.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7조-공항운영자 등의 업무 [↑](#footnote-ref-1)
2.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8조-보안점검 [↑](#footnote-ref-2)
3.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1조-사전 및 사후 브리핑 실시 등 [↑](#footnote-ref-3)
4.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2조-불시평가 사전 통보 [↑](#footnote-ref-4)
5.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4조-점검결과 보고서 보존 [↑](#footnote-ref-5)
6.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4조의2-점검결과 공개 금지 [↑](#footnote-ref-6)
7.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0조-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 [↑](#footnote-ref-7)
8.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7조-교육훈련 수준관리 감독 [↑](#footnote-ref-8)
9.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3조-교육훈련 구분 [↑](#footnote-ref-9)
10.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5조-교육훈련 내용 [↑](#footnote-ref-10)
11.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보안검색요원 [↑](#footnote-ref-11)
12.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별표 8의 3-보안검색요원 정기교육 [↑](#footnote-ref-12)
13.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6조-교육훈련 기록유지 [↑](#footnote-ref-13)
14.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7조-교육훈련 결과 제출 [↑](#footnote-ref-14)
15.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3조-모의훈련 대상 [↑](#footnote-ref-15)
16.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4조-모의훈련 목적 등 [↑](#footnote-ref-16)
17.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4조-모의훈련 목적 등 [↑](#footnote-ref-17)
18.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5조-모의훈련의 종류 [↑](#footnote-ref-18)
19.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6조-모의훈련 관련 기관별 임무 [↑](#footnote-ref-19)
20.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footnote-ref-20)
21.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footnote-ref-21)
22.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footnote-ref-22)
23.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footnote-ref-23)
24. 항공보안법시행규칙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footnote-ref-24)
25. 항공보안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footnote-ref-25)
26.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footnote-ref-26)
27.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5조-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변경 및 취소 [↑](#footnote-ref-27)
28.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footnote-ref-28)
29.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footnote-ref-29)
30.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17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footnote-ref-30)
31.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footnote-ref-31)
32.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8조-신원조사 대상 및 범위 [↑](#footnote-ref-32)
33.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2조-보안검색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 [↑](#footnote-ref-33)
34.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2조의2-항공경비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 [↑](#footnote-ref-34)
35.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7조-교육훈련 수준관리 감독 [↑](#footnote-ref-35)
36.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조11항-정의 [↑](#footnote-ref-36)
37.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0조4항-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 [↑](#footnote-ref-37)
38.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6조-확인대상 [↑](#footnote-ref-38)
39.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0조-현장조사대상 [↑](#footnote-ref-39)
40.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3조-점검대상 및 주기 [↑](#footnote-ref-40)
41.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4조-점검항목 [↑](#footnote-ref-41)
42.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5조-불시평가 [↑](#footnote-ref-42)
43.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7조-자율보고 대상 [↑](#footnote-ref-43)
44. 항공보안법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footnote-ref-44)
45.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정 신청 [↑](#footnote-ref-45)
46.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6-항공보안장비의 점검 [↑](#footnote-ref-46)
47. 항공보안법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footnote-ref-47)
48. 항공보안법 제29조-검색기록의 유지 [↑](#footnote-ref-48)
49.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footnote-ref-49)
50. 국가연구개발 공통보안지침 제6조-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footnote-ref-50)
5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footnote-ref-51)
52.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7조-운영세칙 [↑](#footnote-ref-52)
53.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회의 [↑](#footnote-ref-53)
54. 항공보안법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footnote-ref-54)
55.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지침 제7조-분류기준 [↑](#footnote-ref-55)
56.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활동 [↑](#footnote-ref-56)
57.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지침 제7조-분류기준 [↑](#footnote-ref-57)
58. 항공보안법 제33조-항공보안 감독 [↑](#footnote-ref-58)
59.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footnote-ref-59)
60.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3-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footnote-ref-60)
61.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지침 제9조-보안등급 변경 [↑](#footnote-ref-61)
62. 항공보안법 제33조제1항-항공보안감독 [↑](#footnote-ref-62)
63. 항공보안법 제32조-보안조치 [↑](#footnote-ref-63)
64.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지침 제11조-보안등급 조치 [↑](#footnote-ref-64)
65. 항공보안법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등의 수립 [↑](#footnote-ref-65)
66. 항공보안법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footnote-ref-66)
6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9조7-비밀유지 [↑](#footnote-ref-67)
6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외국인국제항공사업자에 대한 증명 승인 [↑](#footnote-ref-68)
69. 항공사업법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사업의 허가 [↑](#footnote-ref-69)
70.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관 운영 등 [↑](#footnote-ref-70)
71. 항공보안법 제32조-보안조치 [↑](#footnote-ref-71)
72. 항공보안법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footnote-ref-72)
7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footnote-ref-73)
74.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8조-보안점검 [↑](#footnote-ref-74)
75.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8조-보안점검 [↑](#footnote-ref-75)
76.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1조-사전 및 사후 브리핑 실시 등 [↑](#footnote-ref-76)
77.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footnote-ref-77)
78. 2017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19p [↑](#footnote-ref-78)
79. 2017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24p [↑](#footnote-ref-79)